

윤리규범 실천 가이드 라인

• 제 1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본 윤리규범 실천 가이드라인(이하 '가이드라인'이라 한다)은 우리회사의 구성원이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인

제 2조 (적용원칙)

- 1)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윤리적 갈등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윤리 규범과 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.
- 2) 본 가이드라인은 구성원의 건전한 의식과 상식을 존중하여 최소한의 기준만을 제시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에 판단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의 자문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.

제 3조 (적용대상)

본 가이드라인은 우리회사 구성원에게 적용된다,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가이드라인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.

• 제 2장 구성원의 자세

제 4조 (성실한 업무수행)

- 1) 구성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각자에게 부여된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.

- 2)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 5조 (이해상충 문제의 해결)

- 1) 구성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, 이해가 상충될 경우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반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2) 구성원이 업무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구성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해상충행위는 다음과 같다.
 1. 본인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회사와 계약 또는 거래하는 행위
 2. 본인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경쟁업체 또는 협력회사와 거래하는 행위
 3.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타 회사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
 4. 협력회사와 금전대차, 공동투자, 대출보증,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등의 거래 관계를 맺는 행위
 5. 본인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협력회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
 6. 본인이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협력회사의 주식, 채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(단,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 7. 가족 또는 친인척이 회사 및 협력회사와 거래하는 행위
 8.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
 9.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회사에 대한 인사청탁, 각종 편의제공 요구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
- 3) 위 제 ②항은 이해상충 행위의 예시로서 위에 예시한 행위 이외의 경우에도 구성원은 본인의 행위가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6조 (회사 재산 및 정보의 보호)

- 1) 구성원은 회사의 유·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.

2) 재산 보호

1.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자산을 본인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
2. 회사 자산을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저가로 양도, 대여하거나 회사의 계산으로 본인 또는 제 3자의 자산을 고가로 구입, 차용하지 않는다.
3.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.
4. 회사의 예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다.

3) 정보 보호

1.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, 제 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
2. 구성원은 회사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·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,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 회사 외부로 발송되는 전자문서의 보관 및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3.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.

제 7조 (선물, 접대 등의 수수)

- 1) 구성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2) 구성원은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개인적 목적으로 금품, 향응 또는 기타 편의 등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.
- 3) 단, 업무상의 목적으로 상호간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의 법률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선물이나 접대 등은 주고 받을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세부지침은 담당부서와 협의 하에 조직 단위로 제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제 8조 (구성원간의 상호 존중)

- 1) 구성원은 동료 및 상하간에 서로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와 품의를 지켜 행복저해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.

- 2) 구성원 상호간에 性, 학력, 출신지역, 결혼, 인종, 국적,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3) 구성원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근무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,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 3장 협력업체에 대한 자세

제 9조 (공정 거래 준수)

- 1) 협력회사에 공정한 거래를 제공하고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생경영을 정착시킨다
- 2) 자유경쟁 원칙하에 경쟁사와 공정하게 경쟁한다.
- 3) 거래상의 조건 및 절차,계약은 법규 및 시장질서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수행한다.
- 4) 협력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직원에게 일체의 금품,향응,편의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.
- 5) 협력업체가 임직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윤리경영 실천을 저해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.

제 10조 (상호 존중 및 공동 발전 추구)

- 1) 모든 협력업체에 대해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.
- 2) 협력업체는 거래와 관련하여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고, 상호간의 경쟁력 향상 및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
- 제 4장 법규 및 회사 경영방침의 준수

구성원은 회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국내외 법률 및 회사 방침과 사규를 명확히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 11조 (고객만족 추구하고 고객정보의 보호)

- 1) 품질, 신뢰성 및 안전성에 대한 고객의 기대와 요구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며 이를 충족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한다.
- 2) 고객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의 성능과 위험을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.
- 3)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구성원은 관련 법규 및 회사의 방침과 사규에 따라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고객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
제 12조 (경영정보의 작성과 공개)

- 1) 회계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련 법규, 사규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왜곡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.
- 2)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경영정보의 공개는 관련 법규 및 사규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
제 13조 (공정한 거래와 경쟁)

- 1)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또는 법무 담당 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14조 (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)

- 1) 구성원은 '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'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상기 법규의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 담당 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.

제 15조 (안전, 보건, 환경에 대한 책임)

- 1) 안전, 보건, 환경과 관련한 국내외 법규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, 지속적 개선을 추구하여야 한다.
- 2)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3)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

• 제 5장 가이드라인의 운영

제 16조 (책임)

- 1) 모든 구성원들은 윤리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,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질의, 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.
- 2)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. 또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윤리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.

제 17조 (위반행위의 보고 및 제보자 보호)

- 1) 윤리규범과 가이드라인의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의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해당 행위로부터 회사와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.
- 2)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내용을 보호해야 하며 정당한 제보행위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.
- 3) 제보 관련 조사에 협조한 자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.
- 4) 제보자가 제보로 인하여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신변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, 또는 실제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, 제보자는 보호조치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,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해소하도록 조치하고,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/실시한다.
- 5) 제보자 보호규정을 위반한 자(인사상 불이익 등 보복조치, 제보자 신원 및 제보 내용 누설, 제보자 색출 또는 이를 지시하는 행위 등)는 인사위원회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.
- 6) 제보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크게 기여한 제보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제 18조 (준수 및 서약의무)

- 1) 회사의 구성원은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, 매년 정기적으로 윤리경영실천 서약서에 서약할 의무가 있다.
- 2) 본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.